

예산총칙

202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98,583,165	20,957,495
일반회계	636,300,000	19,089,000
특별회계	62,283,165	1,868,495
공기업특별회계	30,113,238	903,397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1,400,064	642,002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8,713,174	261,395
기타특별회계	32,169,927	965,098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051,549	31,546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63,878	4,916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689,625	20,689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38,800	4,164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9,304,376	279,131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336,490	10,095
주택사업 특별회계	1,670,797	50,124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	3,262,600	97,87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7,812	234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3,008,000	390,240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6,000	1,080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500,000	75,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861,8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4,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이체)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